



행정학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잡아주는

필수전환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완벽 반영

# 2024 김종규 ALL바른 선행행정학

01 총론 · 정책



## “2024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을 펴내며”

행정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공직에서 필요한 상식과 이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행정학의 바 이블, 선행정학은 편린적인 행정학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방대한 행정학을 이야기처럼 연결시켜 재밌게 풀어나간 책입니다. 강의 또한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전개되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의 행정학 출제경향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정형화된 문제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새롭고 참신하게 응용된 문제, 종합형 문제, 스토리 문제, 추론형 사례문제, 새롭게 이슈가 되는 신경향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득점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2022년부터는 9급 행정학이 행정직렬 필수과목이 되면서 난이도도 높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2023년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4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급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과 2023년 국가9급과 지방9급 시험 모두 난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난도에 대비하여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2022~2023년도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확장되어 출제될 영역까지 예측하여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편된 제도나 법령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22.1.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비롯하여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작년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최근 행정학의 핫이슈를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9급 행정학이 필수로 전환되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문강좌나 핵심적인 큰 줄기에서 약간 벗어난 디테일한 부분(법령조문이나 이론 각론 등)까지 완벽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딱딱한 기본서의 틀을 벗어나 공부하면서 헛갈리는 부분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암기법, 이해 위주로 공부할 부분,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편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제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대표기출문제들을 소개하였으며, 절마다 OX-지문풀이를 두고, 장마다 장 한눈에 보기를 수록하여 절단위 복습과 장단위 복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학의 큰 그림이 절마다, 장마다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본서에 이어 곧 출간될 2024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과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장·절 편제를 일치시키고, 전3권으로 분권 출간되었습니다.

**여덟째,** 2024 기출문제 선행정학과 부교재인 2024 선행정학 필기노트 기필고(기본서도 놀랄 필기노트)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학습효과를 한층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선행정학의 모든 교재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2024 기본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쉽게, 예시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예시를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침묵으로 표기하여 알기 쉽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구성하였습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2024 기본서는 최근 9급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7급에 PSAT가 도입되면서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등에 대비하여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신경향 내용(재정준칙, 다양성 관리, 통합재정, 공공가치관리론, 넛지 이론, 규제개혁,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공공기관,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재정립운동, 정책평가 실험실제 등)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2024 선행정학은 어떤 난이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모든 것이 올(ALL)바른 선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과 저를 행정학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소통의 장, 담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 새롭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출간된 2024 선행정학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4 선행정학 교정에 힘써준 카스파 수석 조교들이자 제자인 은선, 유리, 소정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고 명쾌하고 올바른 일등행정학입니다.

Return to 필수, Return to 중규

특별히 이번 2024 올(ALL)바른 선행정학은 수개월간 병마와 싸우며 힘든 치료를 이겨내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막내딸 해나(채원)의 쾌유를 응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습니다.

2023.6.12. 카스파 연구실에서

김중규

## 들어보고 실망않는 강의, 김중규 선행정학

**대충이 아닌 진지함과 열정이 녹아있는 강의** - 2021 지방직 9급 합격생

처음에는 노량진 S쌤 강의를 수강했다가 뭔가 연결이 안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이해위주의 다른 강의를 찾던 중 김중규쌤 강의로 변경했습니다. 중규쌤은 정말 대충하지 않고 진지함과 수험생들을 생각하는 잔잔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시켜 줍니다. 절마다 큰 흐름(숲)을 그려주시고 또 심화수업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방대한 행정학의 흐름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행정학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응용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규쌤은 이러한 점을 수업도중에 자연스럽게 유도하셨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것 같아 정말 도움이 컸습니다. 9급행정학이 선택과목이라 대충 70~80점 정도 받았다고 쉬운 강의를 선택했다가 결국 중규쌤한테 다 돌아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행정학을 위해서는 선행정학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 2022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7급 장유리 합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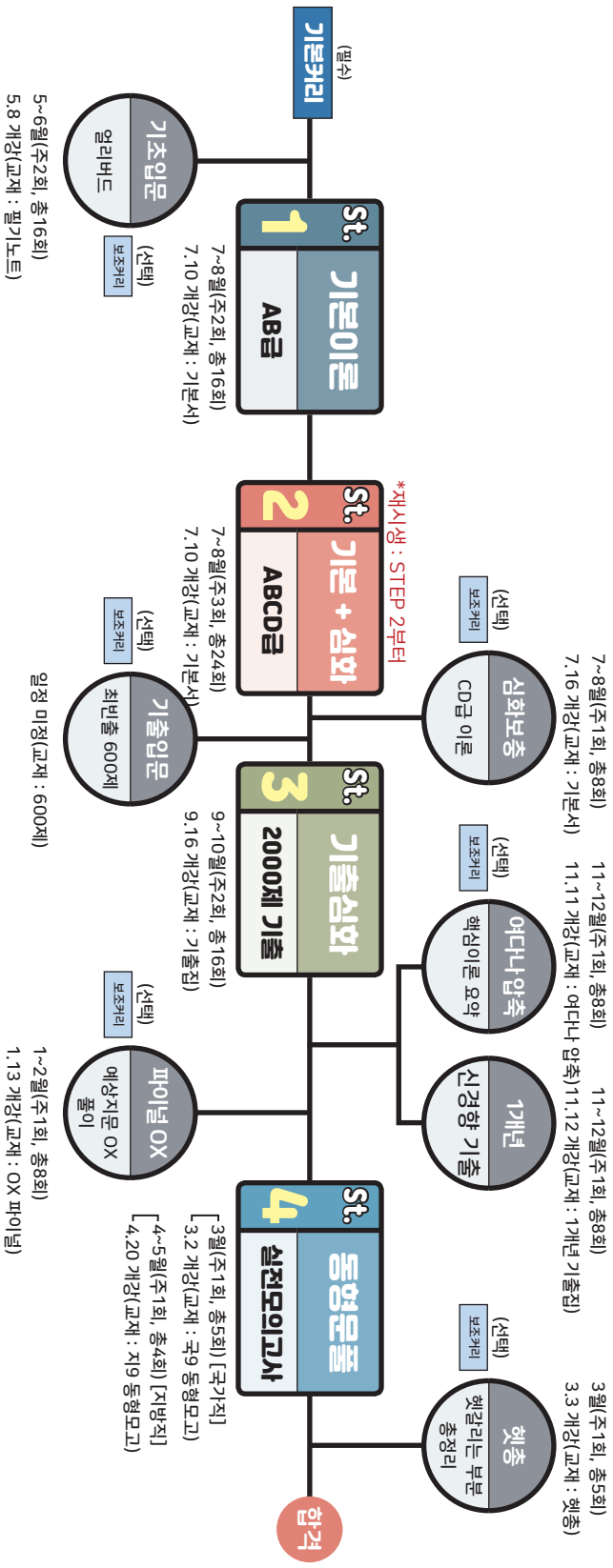
저는 행정학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김중규교수님 커리를 따랐습니다. 범위가 방대한 행정학 과목 특성상 괜히 개념이 모자랄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김중규 교수님의 선행정학 커리를 따라오시면 너무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게, 딱 수험적합적인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정학을 공부하신다면,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1회독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체크가 잘 안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김중규 교수님의 커리에 따라 강의를 듣고, 오답 정리를 해보고, 단권화해보는 과정을 하다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대략적인 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행정학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뻥한 말이지만, 행정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복'만이 살길입니다. 그러니 초반에 어렵다고, 이해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저도 그랬으니) 차분하게 한바퀴, 두바퀴... 책을 공부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선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이 완성될 것입니다. 수험생의 노력, 김중규 교수님의 강의, 선행정학 교재만 있다면 무조건 행정학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주는 선행정학** - 2019 국가직 9급 이서은 수석합격생

저는 처음 선택도 김중규 선생님의 선행정학이었고 끝까지 선행정학만 들었습니다. 행정학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본서는 시험에 빈출되는 순으로 A~D 등급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위주로 반복하고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기출문제집 또한 문제마다 중요도순으로 별 개수가 표시되어 있어 수험기간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매년 달라지는 시험 경향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업데이트 해주셔서 믿음을 갖고 불안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말씀들을 모두 유심히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데 강의 내용 중에 예로 드시는 내용들이 필기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면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행정현장의 실무 경험이 없는 저희로서는 수업을 통해 들은 이런 얘기들이 필기, 면접 더 나아가 합격 후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행정학은 생소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10분 안에 풀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됩니다. 김중규 선생님의 선행정학으로 합격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 9

## 2024 신항정화 커리



1 공공가치관리론

공공가치관리론(Public Value Management) 이란 신공공관리론이 도의시했던 공공의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자는 입장으로 도구적 관점에서 행정의 수단성만을 강조한 신공공관리론이 야기한 행정의 정당성 위기, 즉 행정의 공공성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 ⇨ 공공가치실패론(B.Bozeman)과 공공가치창출론(Moore)이 있음.

- (1) 공공가치실패론(B.Bozeman, 2002) :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가치(공익, 정의, 형평, 대응성, 민주성, 책임성 등 공공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 (2) 공공가치창출론(Moore, 1995) :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관리자들이 공공자산(국가권위, 정부조직,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적극 창출·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 공공가치 창출전략으로 '전략적 삼각형 모형' 제시

더보기

● 최근 행정이론의 변천과 정부역할의 재정립

[1970]	정부실패론	미국 정부가 격동기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불신 초래
	감축관리론	석유파동 이후 나타난 작은 정부론
	공공선택론	Ostrom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
[1980]	신공공관리론	정부불신으로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민영화 추진과 정치행정이원론 재등장
	전문직업주의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수를 증가 ⇨ 업관주의 부활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과 직업관료제 옹호 ⇨ 행정재정립운동의 토대
[1990]	행정재정립론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 등장 ① 스바라(Svara) :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 비판적 해석 ⇨ ∴ 정치행정이원론 ② 워슬리(Wamsley) : 행정재정립론 ③ 굿셀(Goodsell) :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여 정부재창조보다 정부재발견 강조
	정부재창조론	① 오스본 & 게블러는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 정부재발견보다는 정부재창조 강조 ② Clinton 행정부의 기업형 정부 개혁기반 : NPM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 강조
	뉴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의한 민관협치
[2000]	신공공서비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고객중심적 행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
	탈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적 한계 극복 경향
	공공가치관리	공공가치실패론과 공공가치창출론

1 공공가치관리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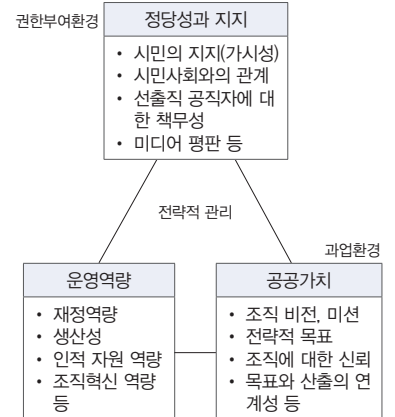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관여와 이들과 공무원간 속 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공공가치의 결정, 공공가치의 창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시민의 능동적 신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강조

2 공공가치창출론

행정의 정당성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분위기(신공공관리론 등)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으로 탈신공공관리론에 해당

3 전략적 삼각형 모형

무어(Moore)는 공공가치창출론에서 공공가치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연계모형, 즉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 전략적 삼각형이란 ① 정당성, ② 운영역량(관료역량), ③ 공공가치(비전, 목표의 실현)의 전략적 연계를 의미. 전략적 삼각형에서 공공가치 창출의 중재자는 집단시민임.



4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

블랙스버그 선언은 1985년 선언되었던 것으로 관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관료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의 정당성이나 미국 관료제를 적극 옹호하였던 운동임. 즉,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정개혁운동으로 워슬리(Wamsley), 굿셀(Goodsell), 울프(Wolf)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으로 발전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지방7급

- ㄱ.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한다.
-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모두 맞다.

답 ④

**1 행동적 시장실패**

행동적 시장실패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휴리스틱(시행착오)을 활용한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방해를 받게되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행동적 시장실패라고 정의함. 자기자신의 내부적 원인(행동편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라는 점에서 외부효과 등에 의한 전통적 시장실패론과는 다름.

**2 넛지(nudge)**

넛지란 어떤 선택을 금지(정부규제 등)하거나 강요(경제적 유인 등)하지 않으면서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제반요소나 정책수단을 말함. 즉 넛지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 경제적 유인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임.

**2 넛지이론**

**(1) 의의**

- ① 행동적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 강조 → 인지오류와 행동편향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 ② 구성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도덕적 실득 X, 경제적 유인 X, 강압적 규제 X
- ③ 탈러(Thaler)와 슌스타인(Sunstein)에 의해 2008년 이후 급부상(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2) 넛지이론의 핵심**

- ①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도와주는 선택설계자
- ②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으로 촉매적 정책수단을 강조
- ③ 설정된 기본값(디폴트 옵션)를 그대로 따르려는 행동편향을 이용한 전략적 정책설계 중시
- ④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중시 → 의견, 이념, 담론에 의존하지 않음
- ⑤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 점증주의에 기초

**● 신공공관리론과 넛지이론의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적 토대	신고전파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경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부역할이론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옵션)설계자
정부정책목표	고객주의, 개인이익 증진	행동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선택설계)
정부개혁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정부

- 01 과학적 관리론은 행정관리설, 관료제이론과 함께 미국 고전기 행정학의 기틀을 다졌다?
- 02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 03 인간관계론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 운영의 민주화가 아니라 조직의 성과 제고이다?
- 04 과학적 관리론과 달리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 존재로 보았다?
- 05 행태론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동일시한다?
- 06 행태론은 정치행정세이원론으로서 행정에서 가치판단요소(정치적 요소)의 존재를 부정한다?
- 07 행태론은 가치평가적이고 규범적·실질적·질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 08 생태론은 행정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 하였다?
- 09 개방체제는 정태적 균형을 추구한다?
- 10 개방체제는 엔트로피를 받아들이는 긍정적 엔트로피를 추구한다?
- 11 체제론은 변화와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동태적 이론이다?
- 12 발전행정은 이론적 과학성이 높고 투입기능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3 후기행태주의는 정책과학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14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 등 과학적 방법을 반대(배격)하였다?
- 15 신행정론은 미국 사회의 격동기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며 등장하였다?
- 16 신행정론은 행정의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강조한다?
- 17 현상학은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 현상을 가급적 분해하여 분석하려 한다?
- 18 현상학에서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고 본다?
- 19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시장실패를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 20 공공선택론은 귀납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 21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선호한다?
- 22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소비자, 국민은 공급자로 각각 규정한다?
- 23 티부가설은 외부효과와 이동비용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 24 Niskanen에 따르면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고 본다?
- 25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 26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달리 제도를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에 한정한다?
- 27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경로의존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
- 28 제도를 이기적인 개인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이다?
- 2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외생적 선택과 공식적인 과정을 중시한다?
- 30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 31 나라마다 제도가 왜 유사해지지는지를 중단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 32 신품공관리론은 공공부문과 시장의 차이를 도외시함으로써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02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
- 04 인간관계론도 인간을 피동적인 존재로 봄
- 06 ... 부정하지는 않는다
- 07 ... 소홀히 하였다
- 09 ... 동태적 균형을 ...
- 10 ...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적 엔트로피를 ...
- 11 ... 없는 정태적 이론 ...
- 12 ... 낮고 산출기능을 중시 ...
- 14 ... 반대(배격)한 것은 아니다
- 17 행태론은 ...
- 18 반대
- 19 ... 정부실패를 ...
- 20 ... 연역적 접근법을 ...
- 22 반대
- 24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은 ...
- 26 ... 한정하지 않는다
- 29 ... 내생적 선택과 비공식적인 ...
- 30 반대
- 31 ... 횡단면적으로 ...

정답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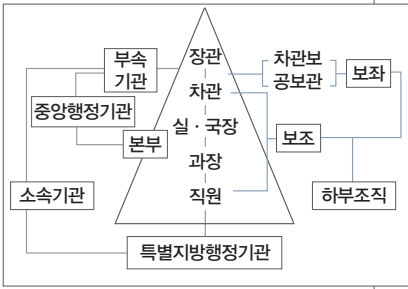
- 33 ... 수행하지 않는다
- 37 ... 탈내부규제모형에서는 ...
- 38 ... 참여적 정부모형이다
- 39 ... 조직 간 관계이다
- 40 ... 정치행정일원론 ...
- 41 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
- 44 신공공관리론은 ...
- 46 신공공관리론에서는 ...
- 47 ... 방향잡기가 아니라 시민에게 ...
- 48 ... 협동적 구조이다
- 49 ...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 ...
- 50 ... 합리적 차원 ...
- 51 신공공관리론은 ...
- 53 거버넌스는 ...
- 55 ...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

- 33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34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 내지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 35 신공공관리론은 노컷기보다는 방향잡기 행정을 중시한다?
- 36 Peters의 참여정부모형은 조직구조의 개혁방향으로 평면조직을 강조한다?
- 37 Peters의 시장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개혁방안으로 기업형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 38 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중 계층제를 문제삼으며 그 대안을 모색하는 모형은 연성정부모형이다?
- 39 거버넌스의 분석단위는 조직 내 관계이다?
- 40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은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 41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시한다?
- 42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이다?
- 43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44 신공공서비스는 시장의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 도입한다?
- 45 신행정학, 시민행정학, 인본주의 조직, 포스트모더니티 등은 신공공서비스의 이론적 원류가 된다?
- 46 신공공서비스에서는 공익을 개인들의 총효용의 합으로 본다?
- 47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방향을 잡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 48 신공공서비스에서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분권화된 구조이다?
- 49 J. Perry는 공공봉사동기의 구성요소로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 50 J.Perry & Wise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매력이나 호감 등은 공공봉사동기의 규범적 차원이다?
- 51 탈신공공관리론은 탈관료제와 경쟁·분권을 중시한다?
- 52 넛지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 53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이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시한다?
- 54 블랙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55 무어(Moore)의 공공가치창출론은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정부관리자들의 공공가치 실현을 강조하였다?

정답	33 X	34 O	35 O	36 O	37 X	38 X	39 X	40 X	41 X	42 O	43 O	44 X	45 O	46 X
	47 X	48 X	49 X	50 X	51 X	52 O	53 X	54 O	55 X					

## 2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 1 우리나라 국가행정기관의 체계



### 2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라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임.

### 3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2023.6.5. 시행)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외교부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음.

### 4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됨. 반면 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이 됨.

### 5 질병관리청

「정부조직법」 개정(2020.9.12.)으로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고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음.

###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전통적(이론상) 개별(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과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종래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았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20.6.9.)으로 국민권익위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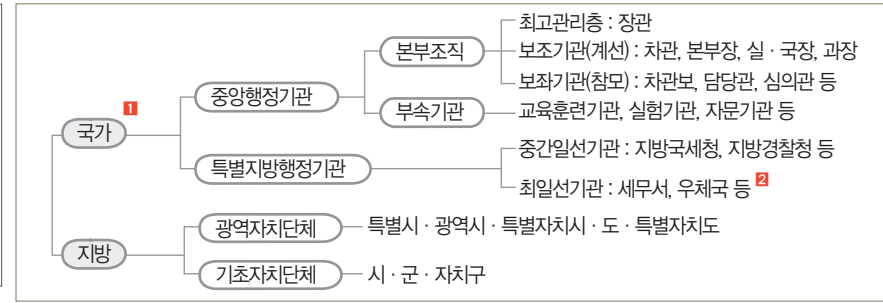
###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7개)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문신기복과외-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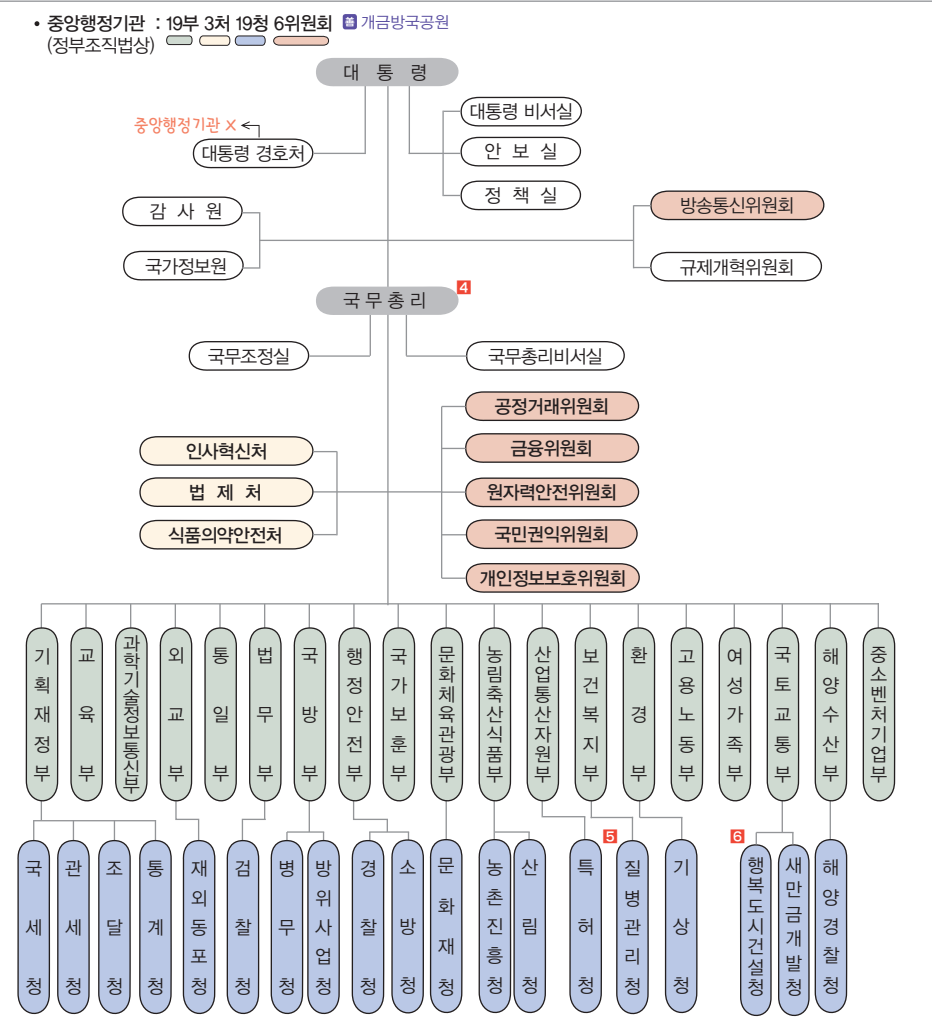
### 7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2023.6.5. 시행)

가법게 이해하기



압기하기 국무조정

(1)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 현재 4가지 유형이 있음.

① 부(部): 소관사무의 결과와 집행, 부의 장은 국무위원, 부령 발동 가능

## 5.1 예산의 개념과 본질

질 한눈에 미리보기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제2절 예산의 종류

제3절 예산결정이론

제4절 예산제도론

제5절 예산과정

- 01 예산과 재정 B
- 02 예산 관련 법률 C
- 03 계획과 예산 D
- 04 재무행정조직 D
- 05 예산의 기능 C
- 06 예산의 원칙 A
- 07 예산의 분류 C



“재무행정은 재미가 없다고 하여 재무행정이라고한다.”

재무행정은 원래 재미가 없다고 해서 '재무(노잼)행정'이라고 한다. 생소한 예산회계전문용어가 엄청나게 등장하기 때문인데 이런 용어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용어들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점수도 안 나오면서 힘만 든다. 예컨대 예산의 원칙 중 완전성의 원칙이란 게 있다. 이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누락 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 현물출자, 차관전대 등이 있는데 여기서 현물출자나 차관전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걸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다. 이런 개념을 몰라도 이런 것들이 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 01 예산과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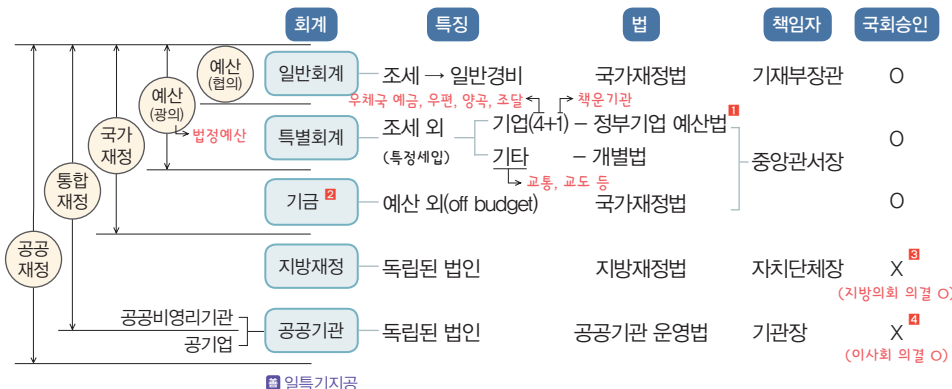
기술이력 | 2011 특채 등 총12회 B 60

#### 1 재무행정의 개념과 본질

- (1) 재무행정의 개념 : 공공기관이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관리하는 제반활동
- (2) 재무행정의 본질 : 물적 자원의 관리라고 보는 관리기능설(L.D.White)과 정책문제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정책기능설(M.E.Dimock)이 대립

#### 2 예산과 재정 - 공공재정의 체계

● 공공재정의 영역



#### 1 특별회계 적용법규

특별회계도 「정부기업예산법」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됨.

#### 2 기금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off-budget)로 운영되므로 법정예산은 아님. 다만 중앙관서장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또한 특별회계의 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함.

#### 3 지방예산의 의결

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자침 시달제는 폐지됨 (2006).

#### 4 공공기관 예산의 확정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자침에 따라 편성하되 정부승인은 불필요하며, 이사회 의결로 확정됨.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예산성과금제도	실시	실시
발생주의·복식부기	실시	실시
계속비	실시	실시
국고채무부담행위	실시	실시(채무부담행위)
회계공무원	· 지출원인행위권자 : 재무관 · 지출권자 :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권자 : 재무관 · 지출권자 : 지출원
출납정리기한 <sup>1</sup>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출납폐쇄기한)
출납기한 <sup>2</sup>	다음연도 2.10	다음연도 2.10(출납사무원결기한)
과세근거 <sup>3</sup>	법정주의	법정주의

**더보기**

● 재정준칙

(1) 의의 : 재정건전성지표(국가채무, 재정수지 등)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강제적 규범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유형

유형	주요 내용	특징(장단점)
채무준칙	국가채무 총액 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한도를 제시	재정건전성 제고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기대응력 약화와 적정 부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움
수지준칙	매 회계연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	경기변동에 무관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거시경제의 안정성 저해 우려
지출준칙	총지출 한도, 재정지출 규모나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준칙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나,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기대응력이나 재정 유연성 저하 우려. 조세지출 우회적 활용시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
수입준칙	재정수입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설정	충분한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에 기여

(3) 장단점

- ① 장점 : 재정건전성 확보 O
- ② 단점 : 거시경제의 안정성 X, 재정운영의 유연성 X

(4) 한국형 재정준칙(2020.10. 문재인 정부 발표) : 2025부터 적용 예정

- ① 채무준칙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 ② 수지준칙 : 통합재정수지비율 -3% 이내
- ③ 지출준칙 : 총지출 한도액 설정(조세지출 등에 의한 감세를 포함)
- ④ 수입준칙 : 수입최저 한도액 설정 등

●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현황

→ 일반정부부문(공공비영리기관 포함)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의 한도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2023.6.1. 현재)

\* 2022.9.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1 출납정리기한**

현금출납 자체가 폐쇄되는 기한

**2 출납기한**

출납에 관한 사무(장부) 정리를 마감해야하는 시한으로 종래에는 출납기한이 다음연도 3월 말까지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2월 10일로 통일됨.

**3 과세근거**

우리나라 모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조세법정주의).

■ 우리나라 재정준칙 추진 상황(정부별 비교)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sup>1)</sup>
채무지표	GDP 대비 60%	GDP 대비 60%
수지지표	통합재정수지 -3%	관리재정수지 <sup>2)</sup> -3%
지표간 관계	둘중 하나만 충족 되면 됨	채무지표 60% 초과시 수지지표는 -2% 적용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적용시기	2025년부터	법 개정후 즉시

1) 윤석열정부가 더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중

2)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재정건전성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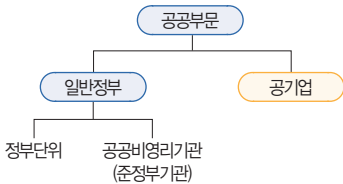
### 1 합목적성

합목적성이란 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합법성 통제 보다는 완화된 통제임. 지방자치에서의 합목적성·합법성 통제와는 반대 개념임.

### 2 수입·지출 연계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허용된다는 것은 특정수입이 특정지출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임을 의미함.

### ■ 공공부문의 구성



### 3 통합예산의 범위

통합예산은 한 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까지, 법정예산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정부예산 총괄 표임. ⇨ 국민입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재정규모

### 4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의 역사

- ① 1979 : 최초 도입(연도별로 발표)
- ② 1999 : 월별로도 작성·발표
- ③ 2005 : 지방재정 포함·작성
- ④ 2018 : 금융성기금 및 공공비영리기관 포함 (2001 IMF 재정통계편람 적용)

### 5 재정통계로서의 통합 및 작성방식

통합예산은 실제 집행하기 위한 공식예산이나 공식회계가 아닌 단순한 재정통계이므로 현금주의로 작성되어 왔으나 2001 GFSS에 따라 현재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 6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 ① 재정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②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적립성, 보험성기금)을 차감한 개념으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재정건전성 평가지표임.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 유사시에 지급해야하는 수입금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집행절차 (자율성)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합목적성 <sup>1</sup>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연계 <sup>2</sup>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초과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	
초과수입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적립

## 03 통합예산(통합재정)

기출이력 | 2019 지방9급 등 총13회

B 60

### 1 개념

- (1) 개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총망라)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sup>3</sup>
- (2) 대두 : 원래 공산국가에서 발달한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회원국에게 재정통계 작성기준으로 도입을 권유하였음(1974). 우리의 경우 1979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IMF 작성기준을 기초로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는 월별로도 작성·발표하고 있음. ⇨ 2005년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작성 ⇨ 2018년부터는 금융성기금도 포함<sup>4</sup>
- (3) 특징 : 공식적인 법정예산은 아니며 법정예산과 병행하여 작성·발표하는 단순한 재정통계임.<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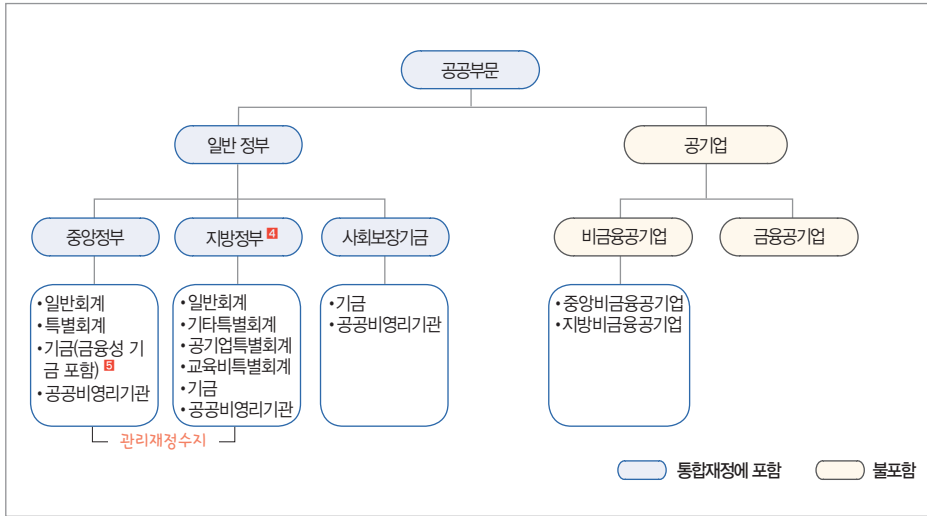
### 2 필요성

- (1) 재정활동의 종합적 파악 : 예산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및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 ⇨ 통제와 관심범위 확대<sup>6</sup>
- (2) 국민경제 효과 분석 : 재정과 국민소득계정, 통화부문 및 국제수지와와의 연결을 통한 재정의 실물경제효과 분석 ⇨ 경제성질별 분류 사용
- (3) 국가간 재정 비교 : 국제적인 표준지표를 사용하므로 정책수립의 능률화 및 재정지표의 국가간 비교 용이 ⇨ 기능별 분류(사회개발, 경제개발 등) 사용
- (4) 건전재정 유도 : 재정활동의 통화효과 및 국가채무부포를 파악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고 건전재정 유도 ⇨ 보전재원 명시

### 3 포괄범위

통합예산의 포괄범위가 종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금융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기금 등)은 제외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반정부 통합재정의 경우 금융성기금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일반정부부문(정부단위와 공공비영리기관)을 포괄하고 있음.

● 통합재정의 범위(제도단위 기초, 2001 IMF GFSM)



4 지방정부의 재정

2005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음.

5 금융성 기금

종래에는 금융성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IMF 재정통계 편람(2001 GFSM)에 따라 현재는 일반정부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있음.

더보기

●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 및 기준 변경

구분	1986 GFSM	2001 GFSM <sup>1)</sup>
분석단위 <sup>2)</sup>	회계단위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제도단위 (일반정부부문 <sup>3)</sup>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
통계기록 방식	현금주의 (현금의 흐름만 포함)	발생주의 (자산, 부채의 변동 등 경제적 사건 기록)
포괄 범위	개요	재정책과 무관한 금융활동 제외
	금융성 기금, 외환평형기금	제외
	공공비영리 기관	제외

- 1) 우리나라는 2012년에 2001 IMF GFSM(재정통계편람)의 적용을 발표하였으며, 2018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이를 적용하였음.
- 2) 회계단위란 금융성부문인지 아닌지 회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단위를 말하고, 제도단위란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부문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구분단위를 말함.
- 3) 일반정부부문이란 정부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정부단위(정부조직)와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을 말함. 공기업은 제외됨.

**1 PPBS 환산작업의 어려움**

PPBS의 연도별·부서별 환산작업은 예산·회계 업무가 전산화가 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함.

**기술체크**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찰간부 등 총5회

- ① 상향식 예산편성으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 ②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 ③ 의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다.
- ④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PPBS는 합리주의 예산으로 최고위층과 전문막로가 주도하는 하향적 예산이다. 답 ①

**2 PPBS에 대한 긍정적 평가**

PPBS는 실패하였지만, PPBS가 프로그램이 평가의 양과 질을 증대시키고 연방프로그램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음.

**3 목표관리(MBO)예산의 특성**

- ① 목표설정 - 참여 - 환류를 핵심구성요소로 함.
- ② 대개 1년 단위의 단기목표 중심으로 운영됨.
- ③ 목표중심의 계획예산제도에 성과주의예산의 관리적 요소를 가미한 것.
- ④ 폐쇄모형(목표모형)으로서 내적 산출량에 초점을 둠.
- ⑤ 결과중심의 관리제도임.
- ⑥ 부서별 (단기)목표와 예산을 연계시킴.

- (4) **과도한 문서·정보량과 환산작업의 곤란** : 분석과정에 많은 시간·비용·노력을 요구함.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이므로 부서구분이 안 되어 있고 PPBS의 과목구조와 예산과목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예산집행시 매년 복잡한 환산작업이 필요 **■**
- (5) **의회의 이해 부족과 의회 지위의 약화 가능성** : PPBS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문적·과학적·계량적이어서 주관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됨. 전문가가 아닌 일반대중의 이해가 어렵고, 의회의 심의기능이나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약화시킴. ⇨ 처음부터 의회는 PPBS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를 반대
- (6) **제도적 경직성** : 장기계획에 의한 구속으로 환경변동이 심할 경우 사업의 축소·폐지 등 상황 변화에 적응이 곤란 ⇨ 조직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만을 예산결정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융통성과 신축성·다양성 부족**
- (7) **과도한 절약** : 값싼 물자의 구입에 집착한 나머지 행정의 질 저하 우려
- (8) **정치적 측면 고려 소홀** : 객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예산의 분석적·합리적 측면만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현실적 성격 및 관료들의 경험(experience) 등 **비경제적 요인 무시** ⇨ 의회나 공무원의 지지를 얻지 못함.
- (9) **준비 부족으로 실패로 귀결** :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였고, 유능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실패한 예산**으로 평가됨. **■**

**더보기**

**(1) 목표관리예산**

- ① 하급자가 상급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한 예산을 배분하는 참여관리적 예산
- ② 집권적 계획예산(PPBS)의 폐해 극복을 위해 1973년 닉슨대통령에 의하여 조직관리기법인 MBO를 예산제도로 도입
- ③ 참여적 방법의 목표 설정 ⇨ 예산으로 목표달성을 지원 ⇨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권 부여 ⇨ 환류와 평가 ⇨ 업적에 따른 보상

**(2) 목표관리예산(MBO)과 계획예산(PPBS)의 비교**

	MBO <b>■</b>	PPBS
기획	부분적이고 보통은 1년, 때로는 5년 계획	종합적이고 주로 5개년 계획
권위구조	분권적이고 계전기관에 치중	집권적이고 막료에 치중
전문기술	상식과 참여에 의한 일반 관리기술과 산술적계산	통계적이고 세련된 분석적 관리기술
프로그램	내적이고 산출량에 치중	외적이고 총비용 대 총편익에 치중
예산범위	부분적·개별적·폐쇄적·상향적	종합적 자원배분, 개방체제적, 하향적
중점	목표의 달성 및 정책집행	목표의 설정 또는 정책결정 비용의 제시
구조·절차	공식적인 행정기구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공식기구(지휘본부) 필요
책임, 환류	결과에 대해 일선관리자가 책임지며 환류 중시	상위층 책임중시, 환류기능 미흡

설치단위	읍·면·동단위	읍·면·동단위
자치단체와의 관계	대등한 협력관계	자문관계

**더보기**

●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2022.1.13. 시행)

- 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1949년 제정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임.
- ② 최근(2021.1.)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음(2022.1.13. 시행).

내용	종전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① 「지방자치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도록 함. ② 「세종특별자치법」: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상으로도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화	일률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둠(기관대립형).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만 규정되어있을 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규정이 없었음.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예시 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 및 청구절차,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청구권자	19세 이상	18세 이상 ↳ 주민조례발안법
	청구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연서인원)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도시: 1/100~1/70 기타 시·군 및 자치구: 1/50~1/20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1/200 100만~800만 광역단체: 1/150 50만~100만 기초단체: 1/100 10만~50만 기초단체: 1/70 5만~10만 기초단체: 1/50 5만 미만 기초단체: 1/20
	처리절차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 제도 도입	규칙 제·개정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제도 없었음.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1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청구권자, 서명인원,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2022.1.13.시행)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감사청구 연령	19세 이상 주민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연대서명 인원 축소	다음 인원 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5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명	다음 인원 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150명
	감사청구 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
	공표와 열람	규정 없었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내용을 5일 이내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강화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규정 없었음.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지방의원 검직금지 대상 명확화	규정 없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검직금지 대상기관 명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화	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 등 행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안 발의요건 등 법정화	지방의회 의안 발의요건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지방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폐치분합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권자 규정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최초임시회의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규정 없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 ▣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시·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없었음.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인구100만)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외에는 특례규정이 없었음.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 특례는 법률 ▣로 정함.	

기출제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서울·지방9급 등 총5회

- 가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모두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답 ①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① 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로 구성  
② 의장 및 부의장 : 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 부의장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부시장 2인 등 각종 특례를 규정

**1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 ① 당선일부터 임기시작후 20일 이내까지 활동 가능
- ②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시·도는 20인, 기초는 15인 이내로 구성

**기술체크**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2023 국가9급

- ① 주민소환
- ② 주민의 감사청구
-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

①②③은 기존의 법에서도 규정되었던 제도들이다. 답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마련	특별자치단체를 인정만 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었음.	특별자치단체의 성격과 설치절차, 규약 등 구체적 규정 신설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②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약상 필요시 특별자치단체의 설치나 해산, 규약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근거 신설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지방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b>■</b> 설치 근거 마련
규칙 제정의 자율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 제정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 제정(위임근거 X)

● 「지방자치법」 추가 개정(2023.3.21.개정, 2023.9.22.시행)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신설

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 부단체장과 제주 행정시장,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음.

(2) 지방의회 교섭단체 설치 근거 신설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음.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더보기**

● 개정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2022.4.26. 시행)

	종전	개편
투표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모두 <sup>1)</sup>
청구방법	서면서명	서면서명 + 전자서명 <sup>2)</sup>
투표일	발의일부터 23~30일 이내에서 단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결정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투표방식	현장투표	현장투표 + 전자투표 <sup>3)</sup>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4 이상 투표, 과반 찬성
개표요건	1/3 이상 미투표시 개표 <b>없음</b>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b>개표</b>

1), 3) 2022.10.27. 시행

2) 2023.4.27. 시행

↳ 개표요건제 시행

↳ 개표요건제 폐지

### 1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본래적인 고유한 자치계층이라 면 광역자치단체는 보충적·보완적 자치계층임.

###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 또는 조정을 거쳐야 함. 또한 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함.

### 3 광역시 요건

과거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던 정치적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상 법정요건은 아님.

### 4 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단체

종래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일하게 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5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2.6)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됨(2023.6.11. 시행). 이로 인해 앞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확대, 중앙부처사무 이양,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의 특례가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특별법에 의하여 종전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함.

### 6 전북특별자치도(2024.1.18. 시행)

- 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②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요건 완화,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 부여
- ③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알기하기

### 1. 광역자치단체

(1) **의의** : 정부직할 자치단체로서 현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있음. 원칙적인 법적 지위는 동일하나, ㉠ 특별시(서울)의 경우 수도로서 일부 특례를 인정받고 있고, ㉡ 특별자치시(세종)와 특별자치도(제주)의 경우도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됨.

### (2) 종류

① **특별시** : 수도로서의 행정 특수성에 입각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특례 2를 인정받는 시  
⇒ 「지방자치법」에 서울이 특별시로 규정된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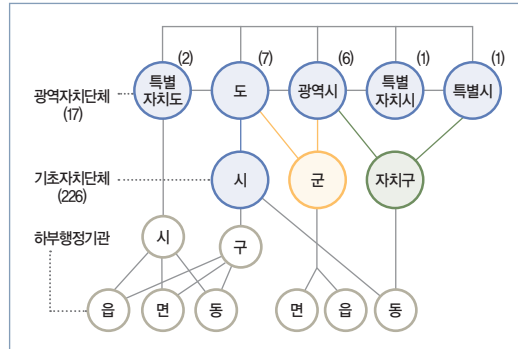
② **광역시** : 대도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도(道)로부터 분리되어, 도와 동격의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 ⇒ 관할구역안에 자치구와 군이 있으며, 광역시의 요건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 3

③ **특별자치시** :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안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함. 4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음.

④ **도** :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가장 넓은 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안에 시와 군이 있음

⑤ **특별자치도** : 도 중에서도 특별법에 의하여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5가 있음(전북특별자치도는 2024.1.18. 시행). 6

●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 3. 주의 [자치단체의 종류·명칭과 근거법률]

어느 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할 것이냐, 어느 도를 특별자치도로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종류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려면(2012년 추가된 특별자치시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 없음.

#### [결론]

- 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법」
- 자치단체의 명칭 : 개별법(특별법)

### 2. 기초자치단체

(1) **의의**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최일선 자치단체로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본래 의미의 자치계층. 현재 시·군·자치구가 있음.

구분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감독	적극적(교정+예방)	소극적(교정)
의회	관여 불가	관여 가능
이해	국가	국가 + 지방
경비	국가가 전액 부담	국가와 지방 부담
근거	법적근거 불요 <sup>1)</sup> (직권위임)	필요(법정위임)
보조	위탁금(교부금)	부담금

1) 개별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지방자치법」(제115조)에 포괄적 위임근거는 있음. ■

**더보기**

●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지방자치법)

국가사무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③ 농림, 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 ④ 국가종합 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 기준, 측량 단위 등 전국적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무 ⑥ 우편·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자치단체의 사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증진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⑦ 국제교류 및 협력

● 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 「지방자치법」 제13조

①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②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공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법」 제115조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추가사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재정 운영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1) 회계의 구분

-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②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2)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②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0일 전까지 의결
- ③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불가
- ④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제출한 후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음.
- ⑤ 예산의 이송·고시 :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자치단체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다만, 재의요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⑥ 성인지 예산서 : 자치단체 장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
- ⑦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 자치단체 장은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해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투자심사 : 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야 함.
- ⑧ 타당성 조사 : 자치단체 장은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함.
- ⑨ 예산의 내용(예산의 형식)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
- ⑩ 예산 과목 : 세입예산은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세출예산은 기능·사업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⑪ 예산총계주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다만 현물출자 기금 등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

(3) 예산의 집행

- ① 계속비 : 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 연장 가능
- ② 예비비 : 자치단체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 가능. 지방의회에서 폐지·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불가
- ③ 추가경정예산 :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음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 기금의 설치·운영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조례로 설치·운영

● 주민참여제도 관련 권리자(2023.6.1. 현재)

제도	청구·선거 연령	권리자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주민투표	18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sup>3)</sup>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소환투표 <sup>1)</sup>	19세			
주민조례청구	18세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정한 재외국민 <sup>4)</sup>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감사청구 <sup>2)</sup>				
지방선거(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소송		위법부당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주민감사청구권자)은 주민소송도 제기 가능		

-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조정되었으나 관련 법들이 일괄개정되지 못해 주민소환투표청구연령은 현재 19세 그대로임. 선거는 18세 이상 가능한데 소환은 19세 이상만 가능하게 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만간 주민소환청구연령도 18세 이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임.
- 2)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으로 주민감사청구연령이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었음.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4)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참여제도 개편 종합(2023.6.1. 현재)

		종전	개편	시행일	
주민조례청구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2022.1.13.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 ~ 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 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주민감사청구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서명인원	광역	500명		300명
		50만	300명		200명
		기초	200명		150명
청구시효	2년	3년			
주민소송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http://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http://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년 2023년 6월 19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28-5  
ISBN 979-11-92405-27-8 (세트)  
값 49,000원 (권3권)

